

# kiri Weekly

2013.8.26 제248호

## 이슈

보험회사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의 국내외 비교와 시사점

## 글로벌 이슈

인도 금융시장 불안과 시사점

미국 정부부채 한도 확대 지연

##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 보험회사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의 국내외 비교와 시사점

이승준 연구위원

## 요약

- 금융회사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또는 유지요건 심사(Dynamic Fit and Proper Test)는 대주주의 출자능력,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인도 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여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
  - 이는 부적격 대주주의 시장진입을 막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 혼란 발생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규제로 볼 수 있으며 2011년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도입되지 못한 바 있음.
- 최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동 법안에는 대주주의 사익편취 방지를 위해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요건과 위반 시 조치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여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주식의 처분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보험선진국인 미국 뉴욕주, 영국, 일본의 경우 보험시장 진입허가 시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대주주의 출자능력, 사회적 신인도와 재무상태 등을 비교적 엄격하게 평가하나, 유지요건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제도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 미국 뉴욕주 보험법은 보험회사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영국의 금융통합법은 대주주 유지요건에 있어 사안별로 검토하여 감독조치를 취하며, 명시적인 주식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일본 보험업법의 경우 일정한도를 초과한 주요주주에 대해 유지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범위가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뉴욕주, 영국, 일본은 대주주 본인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음.
  - 유지요건을 도입하더라도 지나치게 넓은 특수관계인 범위와 자유로운 소유권 행사 침해 소지가 있는 주식처분 명령 등은 법 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
  - 또한 위반 시 대주주 결격사유가 되는 법령도 보험회사 영위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법령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취지에 맞음.

## 1. 검토배경



-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엄격한 자격심사를 통해 부적격자의 금융회사 소유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보험계약자, 은행예금자, 금융투자자)의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사업모형을 가지기 때문임.
-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금융업권의 인·허가 단계에서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 하고 있음.
  - 지난 저축은행 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대주주들의 전횡이 지목되면서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최근 『금융회사지배구조법』<sup>1)</sup> 제정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 강화는 보험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로 보임.
  -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시작된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금융·보험회사의 비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등 금융자회사를 둔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강화가 논의되고 있음.
- 본고에서는 현행 보험업법에 규정된 대주주 관련 규제를 살펴보는 한편, 보험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의 보험회사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아보았음.
  - 보험업법 상 국내 보험회사 대주주 적격성 요건 및 사익편취 방지를 위한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를 살펴봄.
  - 또한 미국, 영국, 일본의 보험회사 대주주 적격성 규제로부터 국내 보험회사 대주주 적격성 규제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봄.

1) 김기식 의원 대표발의 및 정부제출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김기준 의원 대표발의안은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으로 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으로 통일하여 사용함. 각 법률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구기성(2012),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 2. 국내 보험회사 대주주 적격성 규제 현황과 특징



### 가.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요건의 의의

-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Fit and Proper Test)란 금융회사 대주주의 출자능력,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인도가 금융회사를 소유하기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제도임.
  - 이는 금융회사를 소유하기에 부적격한 사람이 금융회사를 소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및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장치임.
  - 현재 진입 시의 인가요건 또는 대주주 변경에 따른 승인과 같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는 보험을 비롯한 모든 금융업권에 도입되어 있음.
-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또는 유지요건 심사는 주기적으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제도임.
  - 미충족 시 금융당국은 일정기한(6개월) 내 대주주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명령하고 이 기간 동안의 결권을 제한하며, 불이행 시 일정기한 내 주식처분까지 명령할 수 있음.
  - 현재 유지요건은 금융권역별로 차이가 나며 금융투자회사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는 현재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되어 있음.<sup>2)</sup>
  - 그러나 보험회사, 여신전문회사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진입 시 외에는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 조항이 없음.<sup>3)</sup>
- 현재 논의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sup>4)</sup>은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전 금융권에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대주주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주 및 주요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

2) 참고로 은행의 경우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유지요건을 6개월마다 심사함(은행법 제16조의4).

3) 구기성(2012),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p. 139.

4) 김기식 의원 등 29인 발의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 금융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대주주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대주주는 유지요건 충족 명령을 받은 날부터 명령을 이행한 날까지 자신이 보유하는 해당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중 10% 이상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금융위원회는 유지요건 충족 명령을 받은 대주주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2011년 11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 과정에서 보험 및 여신전문회사도 대주주 동태적 적격성 심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고려되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sup>5)</sup>를 받아 들어 삭제된 바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는 특히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도입과 이에 따른 처분명령 등이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인 소유권의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행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나. 국내 보험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 및 사익편취 금지규제 현황

■ 국내 『보험업법』은 보험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와 기존 보험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대주주에 대한 엄격한 적격성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의 보험회사 소유로 야기되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

-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정의되며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서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주주<sup>6)</sup>

5) 규제개혁위원회의 삭제권고 이유는 “재산권 행사의 핵심적인 사항(적격성 요건, 대상, 주기)을 모두 시행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규제법정주의의 원칙과 상충되고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골격입법으로 판단되며,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인 소유권의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행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음. 구기성(2012),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pp. 141~142.

6)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7호가목(주: 최대주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바. 입양자(入養者)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出養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아.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차. 본인 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任免)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카.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임원, 나.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를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됨.

- 대주주는 업무능력이 있는 자(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배제), 사회적 신용이 있는 자<sup>7)</sup>, 금융인으로 적격한 자<sup>8)</sup>이면서 보험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최근 5년간 보험업법 및 금융관계 법령<sup>9)</sup>,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채무불이행 사실도 없어야 함.
- 또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아니어야 함.

- 특히 「보험업법」은 대주주의 사익편취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산운용규제를 도입하여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 및 그 임원

- 7)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보험업법이나 이에 상당한 외국 법령 및 기타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보험업법 제13조 (임원의 적격성)
- 8) 금융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가 취소된 금융회사의 영업취소사유 책임이 있는 임·직원으로서 취소가 있던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책임이 있는 자로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보험업법』이나 이에 상당한 외국 법령 및 기타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이미 퇴직한 임·직원이라도 재직 중이었다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았을 날로부터 5년간은 대주주 적격성을 만족하지 못함: 보험업법 제13조 (임원의 적격성)
- 9) 보험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은 48개에 달함. 1. 「공사채등록법」 2. 「공인회계사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8. 「금융지주회사법」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0.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1. 「농업협동조합법」 12. 「담보부사채신탁법」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 「부동산투자회사법」 17.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9. 「산업발전법」 20. 「상호저축은행법」 21. 「새마을금고법」 22. 「선박투자회사법」 23. 「수산업협동조합법」 24. 「신용보증기금법」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6. 「신용협동조합법」 27. 「여신전문금융업법」 28. 「예금자보호법」 29. 「외국인투자 촉진법」 30. 「외국환 거래법」 3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2. 「은행법」 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5. 「전자금융거래법」 3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7. 「주택법」 38. 「주택저당채권 유통회사법」 39. 「중소기업은행법」 4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4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3. 「한국산업은행법」 44. 「한국수출입은행법」 45. 「한국은행법」 46. 「한국정책금융공사법」 4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대주주 발행 주식 및 채권 보유 등을 자기자본의 일정비율로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을 받게 됨.

- 보험회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일반계정은 자기자본의 40% 또는 총자산의 2%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특별계정은 각 특별계정 자산의 2%로 제한됨.
- 또한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과 채권의 보유 합계액도 일반계정은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특별계정은 각 특별계정 자산의 3%로 제한됨.
-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과징금은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 또는 주식 및 채권 장부가액의 20% 이하로 정함.

■ 또한 대주주의 사익추구 방지를 위해 자산운용규제 외에도 보험회사와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있어 이사회 등 내부통제제도, 공시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직·간접적으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대주주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 보험회사가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sup>10)</sup>으로 대주주에게 자산을 매매·교환·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보험회사는 일정금액 이상<sup>11)</sup>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대주주 발행 채권 또는 주식 취득 시,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하며 금융위원회 보고와 공시의무도 부과됨.
  - 일정 금액 이상의 대주주 신용공여나 채권 또는 주식취득 및 이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시 보험회사는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 또한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sup>12)</sup>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10) 정상가격(일반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행위

11)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 원 중 적은 금액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12)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매 분기 말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 3. 보험 선진국의 대주주 적격성 규제 특징



- 미국 뉴욕주<sup>13)</sup>는 보험회사 설립 시 발기인 또는 이사의 범죄 유무와 사회적 신인도 등을 판단하여 면허발급 여부를 결정하지만, 주주에 대해 자격요건 유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보험법 제1102조).
  - 감독관은 면허신청 보험회사의 주요 임원이나 발기인이 사기, 부정, 부도덕행위와 관련된 형태의 범죄행위로 인해 기소된 경우나 신뢰할 수 없는 자인 경우 면허 교부를 거부할 수 있음.<sup>14)</sup>
  - 특히 뉴욕 주내 보험면허를 받은 경우, 만료기한 없이 회사가 영속하는 한 인정함으로써 진입 시에만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으며, 타주 또는 외국 보험회사의 경우에만 매년 갱신하도록 함.
  
- 영국은 금융회사의 주요 임원이나 대주주가 그 역할에 맞는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금융회사 인가를 주도록 명시<sup>15)</sup>하고 있음(FSMA 2000<sup>16)</sup> 제61조).
  - 재무건전성감독기구(PRA<sup>17)</sup>)의 감독지침은 주요 임원 또는 대주주의 재무상황, 전문성과 민사, 형사 및 각종 처벌사유 등 사회적 신인도를 판단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며 유지요건 위반 시에도 사안 별<sup>18)</sup>로 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대주주가 형사범일지라도 자동적으로 인가가 거부되지는 않으며, 범죄의 심각성 및 정황, 당사자의 해명, 제안된 직무와의 관련성, 경과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일본은 보험회사의 주요주주<sup>19)</sup>가 보험회사를 건전하고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재무적 요건을 충족

13) 미국의 보험업은 주별 감독체계이며 뉴욕주 보험법을 대표적인 법으로 간주함.

14) New York Insurance Law Section 1102 (e) : The superintendent **may refuse a license** to any such corporation if he finds, after notice and hearing, that any proposed incorporator or director of a stock corporation, or any director of a mutual corporation, has been convicted of **any crime involving fraud, dishonesty, or like moral turpitude**, or is an **untrustworthy** person.

15) The Authority may grant an application made under section 60 only if it is satisfied that the person in respect of whom the application is made ( "the candidate" ) is a **fit and proper** person to perform the function to which the application relates.

16) 영국의 금융통합법으로 2000년 제정된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17)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18) PRA Handbook FIT 2.1.1G ... conviction for a **criminal offence** will **not automatically** mean application will be **rejected**. The appropriate regulator treats each candidate's application on a **case-by case basis**, taking into account the seriousness of, and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offence, the explanation offered by the convicted person, the relevance of the offence to the proposed role, the passage of time.

19) 보험회사 의결권의 **주요주주기준치**(주주 의결권의 20% 또는 보험회사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15%)

하고 보험업의 공공성을 충분히 이해하며 충분한 사회적 신용이 있는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보험업법」 제271조의 11조).

- 주요주주에 대해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으며, 주요주주가 법령에 근거한 총리의 처분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리가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보험주요주주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주요주주 인가가 취소되면 주요주주는 총리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주요주주기준치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4. 시사점



-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출자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등에 대한 검증은 계약자의 자금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의 특성 상 필요불가결함.
  -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적격성에 결함이 있는 대주주가 금융회사와 고객에게 주는 손실은 막대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전에 엄격한 적격성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의 금융회사 설립 또는 인수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한 대주주의 적격성에 대해 시장 진입 시 엄격한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고, 진입한 이후에는 대주주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대주주와 관련한 자산운용규제와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
  - 특히 보험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일정 부분 대주주거래에 대해 규제가 작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대주주 적격성규제에 대한 영국, 미국, 일본 등 보험 선진국의 경우에도, 보험회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허가단계에서 본인의 출자능력, 사회적 신인도와 재무상태를 평가 이상을 소유하는 의결권보유자는 보험주요주주로 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함.

가하고 있으며, 유지요건의 경우 각국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 유지요건의 경우 미국 뉴욕주 보험법은 보험회사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영국의 금융통합법인 FSMA 2000은 유지요건에 대해 사안별로 검토하여 감독조치를 취하나 주식 처분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일본은 2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요주주에 대해 유지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표 1〉 국가별 보험회사 대주주 적격성 규제

대주주 적격성 규제	진입 시 적격성 심사	유지요건 심사	특이사항
미국	○	X	
영국	○	○	사안별로 적격성 판단
일본	○	△	기준치 초과분 규제

■ 특히 대주주 범위 경우 미국 뉴욕주, 영국, 일본 모두 본인에 대해서만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는 특수관계인까지 확대 적용하며 그 범위 또한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있음.

- 국내의 이러한 현실에 대해 법무부 보고서<sup>20)</sup>도 지적한 바 있으며,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 큰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주주 범위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보험업법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서 위반 시 결격사유가 되는 법령도 보험 및 금융관계법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조세법 처벌법 등 51개 법령에 달함.

- 따라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법령의 범위를 보험업법이나 보험회사의 영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한정하는 것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취지에 맞음.

■ 또한 주식처분명령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처럼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인 소유권의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행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적격성 위반정도에 따른 차등적인 법 적용을 통해 처분명령을 통해 얻어지는 공익이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약이라는 자유시장주의 가치의 훼손보다 현저하게 큰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함. [kiri](#)

20) 법무부(2009), 「규제합리화를 위한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 정비 방안」, 용역보고서, pp. 175~180 참조.